

제 호

토지거래계약 허가증

매도인	성명(법인명)			생년월일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		(휴대)전화번호		
매수인	성명(법인명)			생년월일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		(휴대)전화번호		
허가사항	대상권리				예정금액(원)	
	번호	소재지	지목		면적(㎡)	이용목적
			법정	현실		
정착물	종류		내용		예정금액(원)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※ 유의사항

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,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